

## 국가데이터처 안동사무소 청송분소 공무직근로자(청사미화원) 채용 공고

국가데이터처 안동사무소 청송분소에서는 청사 청소업무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5. 11. 13.

국가데이터처 안동사무소장

### 1. 채용인원 및 수습기간

채용구분	근무부서	채용인원	계약방법	근무시작일	근로조건	급여
공무직근로자 (청사미화원)	국가데이터처 안동사무소 청송분소	1명	근로 계약	'25.12.8.(월) (3개월 수습)	일 3시간, 주5일근무 (근로시간: 07:30~10:30)	*기본급 820,810원, 급식비 52,500원

\* 2025년 기준 기본급임.

※ 근무장소: 경북 청송군 진보면 못안길 14

### 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청사미화원	○ 국가데이터처 안동사무소 청송분소 청사 내·외부 및 기타 지정장소의 청소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

### 3. 응시 자격요건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(정년) 미만인 자
  - ※ 응시연령은 면접일(25. 12. 2.) 기준이며,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 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
-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- (단,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 자는 제외)
-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가점 및 우대사항
  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우대 :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  - 저소득층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    - 저소득층의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·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    - 다자녀 양육자 : 만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
    - 북한이탈주민 :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)
  - 장애인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   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
### 채용 결격사유

-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우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### 4. 채용 방법

#### □ 1차: 서류전형(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- 채용인원의 5배수인 5명까지 선발
-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
  - 정성평가 점수 > 기타점수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 인원을 선발
  - 취업지원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
구분	1차 서류전형 평가 기준		
기타 (5점)	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		
	항 목	내 용	점 수
	저소득층	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1부모가족 세대주	2
	다자녀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)	2
	북한이탈주민	- 북한이탈주민	2
	장애인	- 장애인등록증소지자	3
정성평가 (95점)	경력,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점수		

#### □ 2차: 면접전형(서류전형(1차)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, 전산 및 자료처리 관련 실무능력, 의욕적인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항목	탁월(A)	우수(B)	보통(C)	미흡(D)	불량(E)
지식·창의력 (전문지식, 지침서)	25~21	20~16	15~11	10~6	5~0
설득·대화·발표	25~21	20~16	15~11	10~6	5~0
성실·의욕·책임	25~21	20~16	15~11	10~6	5~0
예의·품성	25~21	20~16	15~11	10~6	5~0

#### □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(1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	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
	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#### □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
- 면접전형(2차)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
  - 면접전형(2차) 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  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#### □ 예비 합격자 선정

-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인 2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정

#### □ 수습 근로

- 최종합격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대상 업무 수행
- 수습 종료 10일 전 시행하는 평가 결과에 의하여 채용 여부 결정
  -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직무수행태도, 복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
  - 평가항목에서 미흡에 해당할 정도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, 7일 이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

#### 5. 심사 일정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5.12.1.(월),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  -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(<http://kostat.go.kr/dbro>) 채용정보(합격·공지)에 공고
- 면접일시: 2025.12.2.(화) 10:00부터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- 면접장소: 국가데이터처 안동사무소 청송분소
  - ※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(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)
- 면접 유의사항
  -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회의실 도착
  - 면접은 접수번호 순으로 실시, 본인 순서에 미입실 시 불합격 처리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12.2.(화)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- 구비서류 제출: 2025.12.8.(월)까지(최종합격자에 한함)

#### 6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11.13.(목) ~ 2025.11.28.(금) 18:00 까지
- 접수방법: E-mail, 방문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  - 방문접수는 평일 9:00~18:00 내,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스캔한 파일로 제출

□ 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전화번호	E-mail
국가데이터처 안동사무소	정 세 이	경북 안동시 마들6길 62	전 화)054-820-0100 팩 스)054-822-9768	seal0525@korea.kr

**7. 제출서류**

- 응시원서 1부(붙임 서식 참조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붙임 서식 참조)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 서식 참조)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**8. 유의사항**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  - \* 자료 제출 시 '서식'에 있는 '안내 사항'은 삭제 후 제출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계약 해지함

-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
  -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
  - 허위,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
  -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(통계청 훈령 제629호)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
- 다음의 경우에는 재공고 후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
  - 심사 최종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



